

E-2 승인 위한 중요한 서류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E-2 는 미국에 소액 투자를 통해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받을 수 있는 비자나 신분을 말한다. 이는 2 년씩 연장할 수 있는 비자타입이기도 하다. E-2 는 회사를 설립한 자에게는 President 나 Supervisor 로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E-2 사업체는 다른 한국인을 직원으로 고용해 E-2 비자를 한국에서 받거나 미국 안에서 다른 신분(예를 들어 F1)에서 E-2 로 신분 변경하는 방법이 있다. E-2 신분은 E-2 사업체가 계속 운영이 되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2 년씩 연장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 또한 노동허가증을 받아 다른 어느 곳에서든지 취업할 수 있으며 또한 자녀들은 공립학교에 보낼 수 있다는 등의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하겠다.

E-2 비자는 Executive 나 Supervisor 같은 직책으로 받을 수 도 있고 중요한 기술 (Essential Skill) 직원으로 E-2 비즈니스를 성공 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직원이라는 조건하에 받을 수 있는 경우 등으로 나뉘어 진다. 이번 칼럼에서는 E-2 비자를 추가서류 없이 승인 받을 수 있는 방법들로 중요한 서류 몇가지를 리뷰 해보고자 한다.

1. 비즈니스플랜

이민국에서 E-2 를 승인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시 보는 것은 이 비즈니스를 통해 신청자와 그 가족 뿐만 아니라 현지인의 고용을 통해 미국경제에 과연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요시 되는 것은 바로 비즈니스 플랜이라 할 수 있겠다. 새로 시작하는 회사라면 회사의 목적, 마케팅 전략, 앞으로의 비전, 경쟁사, financial projections 등을 보여줌으로써 이 사업체가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더불어 신청자와 그 가족의 생계뿐만 아니고 많은 고용과 창출을 해낼 수 있음을 보여 준다면 E-2 를 승인 받는데 있어 높은 승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조직도

E-2 승인이나 연장을 위해 꼭 직원이 있어야 하는것은 없으나 시작하는 비즈니스나 E-2 비자를 연장하기 원하는 시점에서는 견고한 조직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경우 이민국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이유 중의 한가지는 이 포지션이 정말 필요한가이다. 예를 들어 Computer consulting 회사에서 Manager 로 일한다고 E-2 를 받았다고 하자 그렇다면 이민국은 이 회사에서 manage 할 수 있는 직원이 있는 것을 보기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 회사에서 보여 주어야 할 것들은 해당 직원의 job descriptions, 학력, 연봉 등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함과 동시에 그 직원의 credential 즉 컴퓨터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입증해 보임으로써 E-2 Manager 신청이 허용된 것이 아님을 입증해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Computer consulting 회사의 Manager 로서 충분한 역량이 있으며 그 능력 또한 다분함을 입증시켜 준다면 의심의 여지는 없어질 것이다. 때문에 어떤 직원을 고용했을 시에는 그 자리의 타당성과 입지를 견고히 하고 정확한 조직도를 보여줌으로써 그 직책이 회사에 얼마나 중요하며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E-2 비즈니스에 essential skill 을 통해 비자를 받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같이 일할 직원의 학력이나 job descriptions 를 통해 신청인의 skill 이 정말 unique 해서 미국에서는 찾을 수 없으므로 외국인을 고용 해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것은 이 비즈니스의 성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부각 시킨다면 더 없이 좋을 것이다.

3. 직무 내용(Job descriptions)

위에서 언급한 조직도와 함께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job descriptions 이다. 이민국에서는 구체적인 job descriptions 을 원한다. 또한 상사, 동료나 부하직원의 job description 을 원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essential skill 의 직원일 경우 supervisor 의 편지를 통해 정확히 이 essential skill 직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왜 미국에서는 구할 수 없는 회사의 성공에 중요한 skill 을 가진 직원인가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하겠다.

4. 비즈니스 관련서류

이민국에서는 비즈니스가 정말 운영 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 invoices, utilities, 전화 bills 뿐만 아니라 landlord 로부터의 편지 등을 통해 이 회사가 정말 그 로케이션에서 운영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 할 때가 있다. 이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회사 내부나 외부의 칼라 사진을 보내는 것이다. 이때 사진에 일하는 직원들이 보이고 다른 장비등이 보인다면 또 하나의 좋은 입증자료가 될 것이며 이 회사가 정말 운영하고 있음을 보이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주로 이민국에서 의심하는 것은 과연 이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다. 많은 Computer consulting 하는 E-2 회사들이 고객회사에서 일하면서 고객 근처의 사무실을 빌려 쓰다가 이민국에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 여부를 요구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서류들을 미리 준비 하여 보낸다면 불필요한 의심으로 인해 요청되는 추가 서류는 없을 것이며 E-2 비자를 받는데 더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안에서 신분을 E-2 로 변경 하려고 할 때 한가지 유리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15 일 만에 결과를 premium processing 로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이때 위와 같은 서류들을 잘 준비하여 신청한다면 별다른 추가서류 요청 없이 15 일 만에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 PA 주 변호사

Tel) 201-461-2380

park@jparklawfirm.com

<http://www.avvo.com/attorneys/07024-nj-jaihong-park-1722462.html>